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476호

2023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3. 5. 15 .

서울특별시장

1. 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총 8,816대(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승합차 16대)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택시는 별도 공고 예정

① 전기승용차 : 일반 5,520대, 우선순위 780대

② 전기화물차 : 개인 1,250대, 택배 750대, 중소기업 생산 250대, 우선순위 250대

② 전기승합차(중형) : 어린이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

※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 예정(예 : 상반기, 하반기)

○ **보급기간** : 2023. 2. 27.(월)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

주의 1.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특별시 의견을 따릅니다.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서 열람 가능**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2. 지원자격 및 대상

ㅇ **공통자격**

- *(공통자격)*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3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예외 적용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법인 승용(초소형), 화물(경형, 초소형) 구매 시 재지원제한기간 제한없음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별 기준

〈 승용, 화물 〉

- *(개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렌탈·리스 용도**로 차량 구매, 등록 시

‣ *(1*년 이상 장기렌탈·리스*)* 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실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 사업장 소재지가 *30*일 연속 서울특별시인 경우 신청 가능

※ 단기렌탈·리스로 신청 후 *2*년내 타 지자체 거주민에게 장기 렌탈할 경우 보조금 환수

- *(외국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1)*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승합-중형 〉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 가능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신고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주소지가 "서울"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리스·렌트용 구매는 불가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구매지원 신청시 필수요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④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비보조금	지방비보조금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	180
	소 형	최대 733	580	153
	초소형	정액 472	350	122
전기화물	소 형	최대 1,600	1,200	400
	경 형	정액 1,260	900	360
	초소형	정액 825	550	275
전기승합	중 형	최대 7,000	5,000	2,000

※ 승용차(중·대형, 소형), 화물차(소형) : 지방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기구 장치 등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량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

※ 차종별 보조금은 붙임 2 및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참조

○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구 분		추가지원
전기승용	중·대형, 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화물	소형, 경형, 초소형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초소형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전기승합	중 형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4.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23. 02. 27.(월). 10:00 ~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2023*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 구매가능 대수

① 승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의 경우 초소형 승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및 구매대수 제한 없음

② 승합

- 어린이통학차량 : 개인, 개인사업자 *1*대, 법인 *2*대

※ 법인은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순환, 통근버스용 : 법인 *2*대(개인, 개인사업자는 미지원)

③ 화물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시 미지원)

※ 기존 노후 경유(화물)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의 경우 경형, 초소형 화물차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으나 구매대수는 *50*대로 제한

※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시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별지 제*4*호서식), 단, *K-EV100* 참여업체 및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 제외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중·대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소형 화물차)을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내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국비 신청 불가함에 유의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추가 서류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만 18세~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지원신청한 건 중에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본사에서 10일 이내에 차량출고 가능하다고 제출한 명단에 한하여 서울시에서 자격부여

※ 각 본사에서 greencar@seoul.go.kr로 명단 제출한 건에 대하여 익일 자격부여 예정

※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하며, **2개월내 미출고시 보조금 신청 취소**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를 받은 차량에 한하여 **출고예정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서울시에 요청**

○ 서울특별시에서는 제작·수입사의 출고확정 통보 순서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한정**(단, 1년 이상 장기 렌탈·리스업체 제외)

※ 차량출고 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문의

6. 보조금 지급(모든 서류는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

ㅇ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등록증(사본), 제조사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어린이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③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 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특별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개인 선호 변경, 제조수입사 출고 지연 등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안됨

④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⑤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이하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⑥ '23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특별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7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5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준수 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에 명의이전 없이 타 지자체로 이사시(전출)에는 보조금 미환수(사전승인 불필요)

-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회수함

※ 서울특별시 내 판매 : 지급된 보조금(국비+시비)의 30%

※ 타지자체 판매 : 국비의 30% + 시비[운행기간별 회수요율 (표1) 적용]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 말소(폐차의 경우 2년, 수출의 경우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말소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차액 회수액은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표2.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 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제조·수입사 지점, 대리점(카마스터, 직원 포함)의 전기차 업무처리 (단순 문의 포함) 등 관련 모든 문의는 해당 제조·수입사 본사에 문의

※ 제조·수입사 본사에서 모든 대리점 지점에 대해서 민원 문의 처리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환경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의 해석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명	주요 역할	연락처/홈페이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	044-201-6888
전기자동차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충전소 찾기 ○ 전기자동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한국환경공단	○ 법인(전기승용 및 전기화물) 2대 이상 구매 시	032-590-9907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충전기 설치, 충전기 고장신고 ○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서울특별시 친환경차량과 (전기차 보급부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120 다산콜

< 제작사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현 대 자 동 차	080-600-6000
기 아 자 동 차	080-200-2000
B M W	080-269-2200
한 국 G M	080-300-5000
스텔란티스 코리아	080-365-1200
테 슬 라	080-617-1388
벤 츠 코 리 아	080-001-1886
쌍 용 자 동 차	080-500-5582
폴스타오토모티브	080-360-0100
볼 보	1588-1777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1577-6905
스마트솔루션즈	031-237-3425
대 창 모 터 스	043-535-6336
마 이 브	1544-0703
쎄 보 모 빌 리 티	1522-9282
제작사(중형 승합)	**연 락 처**
현 대 자 동 차	080-200-6000
에디슨모터스(주)	055-960-3420
㈜ G S 글 로 벌	02-2005-5191
비 바 모 빌 리 티	1533-8233
이 비 온	1588-6389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 대 자 동 차	080-200-6000
기 아 자 동 차	080-200-2000
한 신 자 동 차	02-761-8890
제이스모빌리티(주)	1533-8816
파 워 프 라 자	02-855-4955
제 인 모 터 스	053-630-2800
대 창 모 터 스	043-535-6336
이 브 이 케 이 엠 씨	02-553-9866
㈜ G S 글 로 벌	02-2005-5489
비 바 모 빌 리 티	1533-8233
에 디 슨 모 터 스	055-960-3420
일 진 정 공	031-376-9012
경 인 모 터 스	032-563-0303
㈜ 오 텍	041-339-3300
디 피 코	033-340-4800
㈜ 진 우 에 스 엠 씨	063-838-2529
스 마 트 솔 루 션 즈	031-237-3425
마 스 타 전 기 차	1661-2500

붙임 *1.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2.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

*[*별지 서식*]*

제*1*호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초소형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지역거점사업참여 확인*(*신청*)*서

제*4*호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제*5*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 · 수입사**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 · 등록 가능시)	**제작 · 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특별시 → 구매자, 제작 · 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 · 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작 · 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 · 수입사 → 구매자**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 · 수입사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작 · 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 (공문제출) ※ 서울특별시 구매보조금 지급요청 공문 제출(계약서 첨부)
↓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조달구매 등록
↓	
차량 출고 및 등록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구매기관 → 서울특별시(보조금 지원시스템)
↓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함께 제출

붙임 2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제작사의 주행 및 가중거리 조정에 따라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 *15*개사 *61*종

구분	제조·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용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18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18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롱레인지 AWD 20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6 스탠다드 2WD 18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 캠 미적용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678	179	857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680	180	86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655	173	828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653	172	825
		Electrified GV70 AWD 19인치	337	89	426
		Electrified GV70 AWD 20인치	322	85	407
		G80 Electrified	337	89	426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340	90	43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337	89	426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326	86	412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11	82	393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680	180	86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680	180	86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680	180	860
		니로 플러스	680	180	860
		The all-new Kia Niro EV	680	180	860
		EV6 GT	304	80	384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용	BMW	IX3	293	77	370
		MINI SE	557	147	704
		I4 eDrive 40	326	86	412
		I4 M50	301	79	380
	한국GM	볼트 EV	640	169	809
		볼트 EUV	640	169	809
	스텔란티스 코리아	DS3 CROSSBACK E-TENSE	459	121	580
		Peugeot e-2008 SUV GT	438	115	553
		Peugeot e-2008 SUV	459	121	580
		Peugeot e-208	484	128	612
	테슬라	Model 3 RWD	260	68	328
		Model 3 Long Range	260	68	328
		Model 3 Performance	260	68	328
		Model Y RWD	260	68	328
		Model Y Long Range	260	68	328
		Model Y Performance	260	68	328
	벤츠 코리아	EQA 250 (MY22-2)	273	72	345
		EQA 250 (MY22-1)	268	70	338
		EQB 300 4MATIC (5인승)	275	72	347
		EQB 300 4MATIC (7인승)	275	72	347
	쌍용	코란도 E-motion	608	160	768
	폴스타 오토모티브	Polestar 2 Long range single motor	488	129	617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201	53	254
	볼보	C40 Recharge twin	212	56	268
		XC40 Recharge twin	203	53	256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253	66	319
		아우디 Q4 Sportback e-tron 40 Premium	253	66	319
		폭스바겐 ID.4 Pro	560	148	708
	스마트솔루션즈	EV Z	472	124	596
초소형	대창모터스	DANIGO	350	122	472
	마이브	마이브 M1	350	122	472
	쎄보모빌리티	CEVO-C SE	350	122	472
		CEVO-C SE VAN	350	122	472

※ (일 반) 국비는 차량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5.7천만원 미만 100%,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50%,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시비는 국비에 비례하여 지원

※ (초소형) 국비 350만원 정액지원, 시비 122만원 정액지원

▢ 전기화물차: *20*개사 *42*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화물	소형	현대	포터 II 일렉트릭(2022년)	1,200	400	1,600
			포터 II 일렉트릭(2023년)	1,200	400	1,600
		기아	봉고Ⅲ 전기차	1,200	400	1,600
		한신자동차	플러스2.0	648	216	864
		제이스 모빌리티(주)	이티밴 (22MY)	1,200	400	1,600
			이티밴 (23MY)	1,200	400	1,600
			이티4밴(23MY)	1,180	393	1,573
		파워프라자	봉고3ev피스	536	178	714
			봉고3ev피스더블캡	437	145	582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784	261	1,045
			다니고C	1,112	370	1,482
			다니고C2	909	303	1,212
		이브이 케이엠씨	MASADA 2밴	1,124	374	1,498
			MASADA 4밴	1,025	341	1,366
			MASADA 픽업	1,078	359	1,437
			MASADA 3세대 2밴	1,124	374	1,498
			MASADA 3세대 4밴	1,025	341	1,366
		㈜GS글로벌	T4K	1,200	400	1,600
		비바모빌리티	비바(밴)	932	310	1,242
			브라보	802	267	1,069
			젤라	986	328	1,314
		㈜제인모터스	칼마토EV1톤 내장탑차	498	166	664
		이엔플러스	이엔플러스 EV1톤 롱바디트럭	1,009	336	1,345
			이엔1톤 롱바디카고	959	319	1,278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49.9km)	1,053	351	1,404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186.1km)	1,321	440	1,761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봉고)	1,460	486	1,946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포터)	1,444	481	1,925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400	466	1,866
			봉고 전기차 저상형 냉동탑차	1,400	466	1,866
		경인모터스	경인1톤 전기 냉동탑차	1,151	383	1,534
		㈜오텍	오텍 무시동 전기 냉동탑차(봉고)	1,253	417	1,67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ev피스	900	360	1,260
	초소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550	275	825
			다니고3 픽업	550	275	825
		디피코	포트로 탑S(HMT-250TS)	550	275	825
			포트로-픽업S (HMT-250PS)	550	275	825
		㈜진우에스엠씨	포텐스	550	275	825
		스마트솔루션즈	D2C	550	275	825
			D2P	550	275	825
		마스타전기차	MASTA VAN	550	275	825
			MASTA HIM	550	275	825

▢ 전기승합(중형): 6개사 8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비보조금 (만원)	지방비보조금 (만원)	지원총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 (2023년)	4,834	1,933	6,767
			카운티 일렉트릭 (마을버스 2023년)	5,000	2,000	7,000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운송용 33인승 V2)	4,052	1,620	5,672
		에디슨모터스㈜	SMART8.7	4,308	1,723	6,031
		㈜GS글로벌	NEW BYD eBUS-7	2,894	1,157	4,051
		비바모빌리티	브이버스60	3,211	1,284	4,495
		이비온	E6 (JL618S)	2,362	944	3,306
		한차	GREENWAY720	4,530	1,812	6,342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3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우선순위대상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 · 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우(장기렌탈·리스 제외)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5년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은 매수자에게 인계

○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지켜야 할 운행기간(2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명시된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 전기화물차의 경우 1년이내 1만km 미운행 차량 판매시 지급된 보조금의 30%이상 환수

○ 의무운행기간(5년) 내 등록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차명 포함)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차량 변경이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단, 2대 이상을 구입하는 장기리스는 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제한 제외),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어린이통학차량은 예외, **개인사업자가 전기화물차 구매시 공동대표 등록 가능**)

○ 동일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재지원제한기간(승용 2년, 승합2년, 화물 5년, 소급적용)이내 동일한 차종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차, 경형화물차, 초소형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특별시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서울특별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3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table>
<tr><td rowspan="2">신청인
(제작·수입사)</td><td>제작·수입사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담당자</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2">구매자</td><td>성 명
(법인명)</td><td></td><td>접수번호</td><td></td></tr>
<tr><td>생년월일
(법인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 rowspan="3">전기자동차
구매내역</td><td colspan="2">차량명(차량번호)</td><td>수량</td><td>보조금</td></tr>
<tr><td colspan="2"></td><td>대</td><td>만원</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5">※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td></tr>
<tr><td rowspan="3">보조금
입금계좌</td><td>은행명</td><td></td><td>예금자명</td><td></td></tr>
<tr><td>계좌번호</td><td colspan="3"></td></tr>
<tr><td>지급요청액</td><td colspan="3"></td></tr>
</table>

2023년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초소형 승용 [ ]　지역거점사업 참여
초소형, 경형 화물 [ ]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의 지역거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5대이상 구매시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업 종	
주 소		연 락 처	
회사소개			
사업장 사진			

☐ 사업내용

(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table>
<tr><td rowspan="4">매 도 자</td><td>성 명
(법인명)</td><td colspan="2"></td><td rowspan="4">매 수 자</td><td>성 명
(법인명)</td><td colspan="2"></td></tr>
<tr><td>연 락 처</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2">시 구</td><td>주 소</td><td colspan="2">시 구</td></tr>
<tr><td>이 메 일
*입력 필수</td><td colspan="2"></td><td>이 메 일
*입력 필수</td><td colspan="2"></td></tr>
<tr><td>차종/차명</td><td colspan="2">/</td><td>차량등록일</td><td></td><td>보 조 금</td><td>만원</td></tr>
<tr><td>차량번호</td><td colspan="2"></td><td>차대번호</td><td colspan="3"></td></tr>
<tr><td>사 유</td><td colspan="7">☐ 전출(이사) ☐ 공동명의(보험) ☐ 성능 ☐ 질병 ☐ 경제 ☐ 기타( )
※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 바랍니다.</td></tr>
</table>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할 경우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인계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타 지자체 판매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 시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계함을 동의합니다. 이에, 매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 (인)

매 수 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매수자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판매사유서(차량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 시) 운행거리 증빙자료(전기화물차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판매시)

☞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팩스 접수 불가)

전기자동차 판매 사유서

판매 사유 자유 기재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를 의무운행기간내 판매하고자, 사유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판매자)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table>
<tr><td rowspan="4">판매
차량</td><td>차량번호</td><td></td><td>차대번호</td><td></td></tr>
<tr><td>차 명</td><td></td><td>운행거리</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전면사진(번호판)</td><td colspan="2">계 기 판 사 진</td></tr>
</table>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승인을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 폐차 □ 수출) 승인 요청서

소 유 주	성 명 (법인명)		연 락 처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 량 번 호			차 대 번 호	
말 소 사 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전기자동차를 5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5년) 시에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말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서울특별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greencar@seoul.go.kr(팩스 접수 불가)